

의안번호	제 665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월 일 (제 330 회)

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6월 2일

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

의 안 변 호	665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6월 2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2014년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(특정부동산분) 및 취득세(자동차 등 대체취득시) 면제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붙임

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(안)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1. 감면대상자

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
(다만, 사망자·실종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
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2. 세목별 감면내역

가.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지역
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한다.

나. 취득세

- 세월호 사망자나 실종자의 소유였던 자동차 및 기계장비가
세월호 사고로 멸실 또는 파손되었고, 이에 따라 희생자 가족이
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취득하는 경우
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- 다만,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
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(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)을 초과
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

3. 기타

- 가.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역자원세 특정부동산분 및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나.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 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관 련 법 령(발췌)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~ ③(생략)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 ①~③ (생략)

④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“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□ 지방세법
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(생략)

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1.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(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장에서 같다) 또는 선박(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.

과세표준	세 율
600만원 이하	10,000분의 4
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 + 6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5

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 + 1,3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6
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 + 2,6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8
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 + 3,9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10
6,400만원 초과	49,100원 + 6,400만원 초과금액의 10,000분의12

2. 저유장, 주유소, 정유소, 유흥장,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.

2의2. 대형마트, 복합상영관(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), 백화점, 호텔,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.

3.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,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.3으로 한다.

③ 제2항의 토지,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,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,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

제148조(소액 징수면제)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세 감면을 추진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감면대상 :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
 - 사망자·실종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
- 감면세목
 - 가. 지역자원시설세(특정부동산분) : 면제
 -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정기분
 - 나. 취득세 면제
 - 세월호에 선적된 희생자 소유의 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된 경우 그 가족이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 취득할 경우

3. 관련조문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 - 지역자원시설세(특정부동산분) : 2013년 재산세 부과자료 기준
 - 취득세 : 대체취득시 감면하므로 추계곤란
- 나. 추계 결과
 - 지역자원시설세(특정부동산분) 감면액 : 65천원 정도
 - ※ 타 지역 거주자이나 도내에 과세물건을 소유한 경우도 감면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별도 재원조달 불필요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생략

6. 작성자 : 안전행정국 세정과장 이 정 호